

“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”



# 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
(경유)

참 조

제 목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



1. 최근 환경부에서는 「건설폐기물법」 개정('23.9.14 개정, '24.3.15 시행)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표사항, 절차 및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을 입법예고('23.11.25~12.25) 하였습니다.

- ※ 위반사실 공표 대상(「건설폐기물법」제56조의3)
  -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
  -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
  -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2월 20일(수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개정(안)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구체적 공표 항목 (안 제27조의2제1항)	▶ ①사업자의 종류, ②명칭·소재지·대표자 성명, ③구체적 위반 행위, ④처분내용(영업정지, 과징금, 과태료 등)·처분일
공표 대상 결정 절차 (안 제27조의2제2항)	▶ 공표 여부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※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
공표 방식 및 기간 (안 제27조의2제3항)	▶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(홈페이지)에 1년간 공개

### 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	개정안	수정안	사유

붙임 :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 끝.

#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---

담당 **염경미**    부장    **강한서**    사무총장 **조정환**    회장   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 행 정책기획 - 573호    (2023.11.21)    접수

우 06752   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   / [www.koras.org](http://www.koras.org)

전화    02-3476-7787    전송 02-3476-8464    / [koras01@naver.com](mailto:koras01@naver.com)    / 공개